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10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○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, 여성, 직장인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,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,

○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자원 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함(제1조, 제2조)

○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, 기능, 조직구성, 자원봉사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의 활동기반을 구축하도록 함(제4조 내지 제7조)

○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제8조)

○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함(제9조, 제10조)

○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제11조 내지 제16조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검토한 바

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,
도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도민의
자원봉사에 대한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
높은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
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
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,
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,

본 조례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『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』이
2001년 10월 의원입법(안)으로 발의되어 제출되어 현재
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, 이 법안 시행에 앞서 조례를
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,

본 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,
동조 제3항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지원 받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작성, 제출의무를 배제시킨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